

2017학년도

학교생활규정집

세화고등학교

차례

1.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1

제 2 장 학생생활/1

제 3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5

제 4 장 상벌점 규정/5

제 5 장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8

<별첨1> 용의복장규정/9

2. 학생회 선거 규정/13

3. 학급회 선거 규정/18

4. 학생 선도 규정/20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26

1. 학생생활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세화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제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생활

제4조 【생활예절】

-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바른 자세로 한다.
- ②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 30°정도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다.
- ③ 상급생과 하급생간에는 정다움과 경의를 표하며 명랑하게 인사를 한다.
- ④ 학교를 찾아오신 모든 어른께 공손하게 인사한다.
- ⑤ 항상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한다.
- ⑥ 공중도덕을 지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제5조 【교내생활】

- ① 등교하여 입실과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아침 자습을 하는 분위기와 습관을 기른다.
- ② 교내 생활은 하나의 집단생활이므로 개인적, 이기적 활동을 삼가 하여 봉사와 협동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보람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복도 또는 계단 통행 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뛰거나 신을 끌면서 다니지 않는다.
- ④ 수업 시작 2~3분전에 입실 완료하여 수업 준비를 한다.

- ⑤ 학교 전체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 ⑥ 낙서는 일체 금하며 책결상을 파손하지 않도록 한다.
- ⑦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보건실을 이용한다.
- ⑧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자유로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 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상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 ⑩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 또는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⑪ 교내외에서 불온문서를 발견하였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나 생활안전부에 즉시 신고한다.
- ⑫ 가정통신문은 꼭 부모님께 전달한다.
- ⑬ 도서실을 이용할 때는 도서실 수칙을 준수하고 정숙을 기한다.
- ⑭ 자기 소지품에는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실 또는 습득시는 즉각 담임교사와 생활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⑮ 조퇴 및 외출은 반드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허가증을 받아 안내실에 제출하고 교문을 통과한다.
- ⑯ 교내에서는 명찰을 반드시 패용한다.
- ⑰ 실내외에 침을 뱉거나 휴지, 음식물 등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⑱ 창문 밖으로 분필, 오물 등을 던지지 않는다.
- ⑲ 음란물(만화, 비디오테이프,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 ⑳ 사물함 관리는 개인 책임 하에 하며, 손망실 시에는 개인 변상토록 한다.

제6조 【교외생활】 학생들은 신분이 학생이므로 학교를 떠나서 생활을 할 때에도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외 생활도 교내 생활과 마찬가지로 예의 바르고 학생다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

- ① 외출 시 복장은 단정히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얻는다.
- ② 학생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 또는 배회해서는 안 된다.
- ③ 제반 교통법규, 질서를 준수하고 승하차시 안전에 유의한다.
- ④ 음주, 흡연 및 환각제 복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⑤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 기관 또는 타 단체조직에 가담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된다.
- ⑥ 교외 생활에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교칙에 의거 징계에 회부된다.
- ⑦ 오토바이 등하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전거 등교 시는 학교가 지정한 곳에

보관한다.

제7조 【교무실 출입】

- ①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출입을 삼간다.
- ② 출입 시 항상 입구에서 목례를 한다.(중앙문 출입을 금하고, 좌우측 문을 이용한다.)
- ③ 출입 전에 용의 복장 등에 유의하고 장갑, 외투, 머플러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교무실 의자에 선생님 허락없이 앉지 말아야 하며 용무가 끝날 때까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용건을 조용히 말씀드린다.
- ⑤ 시험기간 중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교무실 출입을 할 수 없다.

제8조 【주변근무】

- ① 주변은 각 학급에서 2명씩 1주일 단위로 근무한다. 단, 학생회장, 정-부회장, 선도부원, 방송부원, 병약자 등 주변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제외한다.
- ② 주변은 주변 조희부터 주변 종례까지를 하루의 일과로 정하고 수시 청소한다.
- ③ 주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수업 전 칠판 지우기, 지우개 털기 등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실 내외의 비품 정리 정돈 및 청소하기
 - 나. 특별구역 청소
 - 다. 이동수업 시 문단속 철저(도난방지), 냉난방기 전원차단, 전등 소등
 - 라. 기타 학습에 필요한 제반 준비
 - 마. 하교 전 교실 상태를 최종 점검한 후 문단속 철저히 한 후 출입문 열쇠를 교무실 지정된 곳에 반납한 후 귀가한다.
- ④ 주변은 근무 중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하며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9조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각종 전자기기 포함)는 소지할 수 있으나 매일 아침 조희시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맡기고 종례 시에 찾아가도록 한다.

적발내용	조치사항
------	------

<p>일과시간 중 적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적발시 - 별점 3점 및 반성문 작성 · 2회 적발시 - 별점 5점 및 반성문 작성 · 3회 적발시 - 별점 10점 및 반성문 작성 · 적발한 교사는 학생을 생활안전부에 인계하고,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p>고사 중 적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감 교사는 학생 및 휴대폰을 생활안전부에 인계하고 이 사실을 고사계와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담임교사는 부모를 소환하여 해당사실을 알리고, 고사계 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시간 과목점수를 부여한다.

제10조 【흡연 학생처리 규정】

- ① 1차 적발시 : 교내봉사 5일
금연학교 입교(5일): 학기중 실시
흡연피해 리포트 제출
- ② 2차 적발시 : 사회봉사 5일 : 학기 중 실시
금연학교 재입교(5일)
반성문 작성, 각서 제출
- ③ 3차 적발시 : 출석정지 5일
- ④ 4차 적발시 : 퇴학

- * 담배, 라이터 소지도 흡연으로 간주하여 징계함.
- * 금연학교 교육 및 사회봉사의 경우 학생의 수업권 제한
- * 금연학교 교육 시 교육시간에 맞추어 5일간 학부모가 학생을 직접 인계함.

제11조 【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별첨1]와 같다.

제 3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12조 【학생활동지원】 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학생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13조 【총학생회】

- ① 본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
- ② 총학생회는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③ 총학생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2. 학교 행사의 기획·운영에 관한 활동
 3.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
 4.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
 5.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
 6. 학교 전통의 정립,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
 7. 각종 봉사 활동
 8.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④ 총학생회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장 상벌점 규정

제14조 【목적】

학교 현장에서 차별 없는 생활지도로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기본 생활예절과 학칙 등의 규범을 잘 지키고 배려와 봉사의 정신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방침】

- ① 전교사가 지도카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학생지도에 임한다.
- ② 학생들이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 ③ 단순한 경고의 누적보다는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 ④ 상·벌점은 신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0점으로 초기화한다.

제16조 【운영】

① 지도카드의 종류

지도카드는 선행과 모범행동을 기록하는 상점카드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 작성하는 벌점 카드로 구성한다.

② 지도카드의 운영

[상점카드]

- ▶ 모든 교사는 상·벌점 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점을 부여한다.
- ▶ 상점카드의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위원회 의결로 상점을 취소할 수 있다.

[벌점카드]

- ▶ 벌점카드 발행 시 학생에게 경·중을 통보하고 교사가 작성한다.
- ▶ 벌점의 누적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받게 되는 점수까지 벌점은 계속 누적된다.

③ 카드의 작성

- ▶ 경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벌점카드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재한다.
- ▶ 카드 작성 시 학생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지도교사가 학생행동에 따른 벌점을 결정하여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생활평점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도 카드는 생활안전부 상·벌점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④ 결과처리

상·벌점 담당교사는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점카드의 처리]

- ▶ 상점이 많은 학생은 각종 추천에 우선 추천한다.

- ▶ 상점은 별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누적된다.

[별점카드의 처리]

- ▶ 학생 개인의 별점은 학년 단위로 누적되며, 월말 누계 점수에 따라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누계 별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별점 누계	처분	별점 누계	처분
10점	성찰교실 2시간 (반성문 및 교육)	30점	사회봉사 5일
15점	성찰교실 4시간 (반성문 및 교육)	40점	특별교육 이수
20점	교내봉사 5일		

- ▶ 별점 누계 20점 이상인 경우 학급자치회 임원, 총학생회 임원, 동아리 임원에서 탈락된다.
- ▶ 상·별점은 신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0점으로 초기화한다.

⑤ 상별점 기준표

[상점 세부 사항]

구분	항목	내 용	상점
태도	1	수업 태도를 비롯하여 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임	2
신고	2	교내·외의 각종 신고를 잘 함(습득물 포함)	2
청소	3	청소활동을 매우 잘 함	1
기타	4	위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상점을 받을 만한 기타 행동	2

[별점 세부 사항]

구분	항목	내 용	별점
출결	1	지각, 무단 외출을 한 경우	2
기초생활	2	각종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한 학생	2
용의복장	3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수업	4	수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2
기타	5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	2
		학생의 본분을 어긴 경우	2
		기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3

※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예- 학교폭력, 흡연, 절도 등)
-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제 5장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제18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별첨 1> 용의 복장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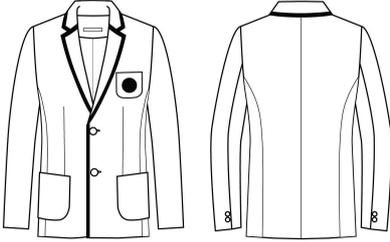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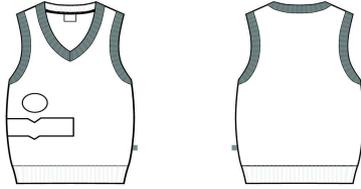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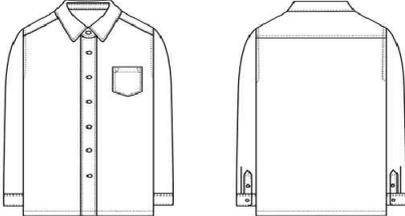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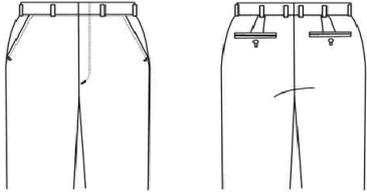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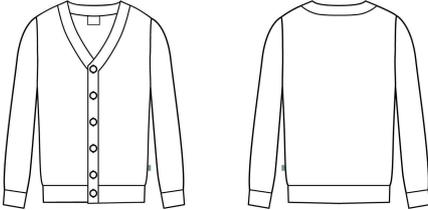
1. 두발규정

- (1)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2) 단, 염색, 퍼머, 스크래치 등 과도한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2. 교복 디자인 규정

(1) 동복



분류	디자인	사양
자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군청색 원단의 싱글 2버튼 테일러드 재킷 ②위 아래 아웃 포켓 ③학교 교표가 새겨진 와펜 부착 ④옷깃에 5mm 회색 배색 ⑤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터 40% ⑥학교표시 지정단추
조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검정색 브이넥 니트 조끼 ②목과 암홀 부분에 회색 ③앞판에 흰색 문양 ④혼용률 : 울 50%, 아크릴 50%
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백색 싱글 스타일 긴팔 와이셔츠 ②왼쪽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③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회색 정장 신사복 바지 ②허리 부분에 폼 조절장치 부착 ③정장이 부분의 지름이 신장170cm 기준 19cm 이상 ④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터 40%
카디건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색상 군청색 ②학교표시 지정단추 ③혼용률 : 울 50%, 아크릴 50%
넥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주색 ②학교표시 문양 있음

(2) 하복



분류	디자인	사양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백색 싱글 스타일 반팔 와이셔츠 ②왼쪽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③학교 교표가 새겨진 와펜 부착 ④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⑤단추 : 플라켓 처리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균청색 정장 신사복 바지 ②허리 부분에 폼 조절장치 부착 ③정장이 부분의 지름이 신장170cm 기준 19cm 이상 ④혼용률 : 울 50%, 폴리에스터 50%

3. 교복 착용 규정

(1) 하복

- 가. 상의 : 흰색 반소매
- 나. 하의 : 군청색 바지
- 다. 착용기간 : 늦봄 ~ 초가을 (동복과 하복의 착용 혼용기간을 둔다)
- 라. 생활복을 하복 대신 착용 가능

(2) 동복

- 가. 겹옷(JACKET) : 군청색(네이비) 신사복('차려' 자세로 섰을 때, 소매 길이는 손목보다 길어야 하며, 겹옷 전체의 길이는 소매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함)
- 나. 상의 : 순백색 셔츠(흰색 남방까지만 허용)
- 다. 하의(PANTS) : 회색(그레이) 바지
- 라. 조끼(VEST) : 검정색 니트(배색:진회색, 로고:화이트)
- 마. 착용 기간 : 초가을 ~ 늦봄

4. 유의 사항

- (1) 하복, 동복 등 모든 교복은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디자인으로 변형된 교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 * 특히 바지폭을 좁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면 안 됨.
 - * 양말을 반드시 착용한다.
- (2) 체육복은 체육 수업 중에만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 시 착용 가능함)
- (3)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휴대품 및 장신구는 금한다.
- (4) 부착물은 다음과 같다.
 - 가. 교내에서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한다.
 - 나. 학교에서 공인된 것 이외는 부착할 수 없음.
- (5) 위 세화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세화고등학교에 있으므로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함.

2. 학생회 선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의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자
- ② 본교 재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본교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 【임기】 임기는 당선일부터 익년 선거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4조 【보궐 선거】 학생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구성

제5조 선거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 업무에 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일 공고
- ② 선거인 명부작성
- ③ 입후보자 서류 접수와 심사
- ④ 입후보자 기호결정과 공고
- ⑤ 선거운동 관리
- ⑥ 학견 발표 개최
- ⑦ 투표 및 개표 사무 집행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대의원(학급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가거나 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지정

한 학급의 임원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학생회 부회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대의원회 총무로 한다.

제9조 【지도위원회 구성】 지도위원회는 생활안전부 교사로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지도위원회 조직】 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 3 장 입 후 보

제11조 【선거일 공고】 선거 관리 위원장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제12조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②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한다(별도양식)

제13조 【입후보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도양식)
 - 나. 정·부회장 입후보 추천자(학생) 연명부(별도양식)
 - 다. 정·부회장 입후보 추천자(교사) 연명부(별도양식)
 - 라. 선거운동원(10명 이내) 등록신청서(별도양식)
-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14조 【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게시물】 게시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게시물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게시물 내용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게시물 부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③ 개인 제작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④ 게시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조 【합동회연설】 합동연설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합동연설회는 동일 날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② 연설순서는 입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③ 연설은 10분 이내로 한다.
- ④ 연설 원고는 합동연설회 3일 전까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⑤ 반별 유세는 각 반 당 1회로 한다.

제17조 【불법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외 선거운동
- ② 금품수수
- ③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선거운동

제18조 제17조를 위반한 입후보자는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1항에서 회부된 안건은 지도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투 표

제19조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20조 【투표용지】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21조 【참관인】 투표소에는 각 입후보자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개 표

제22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지도위원회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23조 【참관인】 개표소에는 각 입후보자당 1인씩 개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24조 【발표】 각 입후보자의 득표수는 개표가 완료된 후 즉시 발표한다.

제25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 ① 규정 투표용지가 아닌 것
-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
- ③ 어느 난에도 표시되지 않은 것
- ④ 둘 이상의 난에 표기한 것
- ⑤ 어느 난에 표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⑥ 정해진 기표방법 이외의 방법이나 문자로 표한 것

제 7 장 당선자 및 공고

제26조 【당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최다 유효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27조 【단일 입후보】 단일 입후보시 총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50%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7조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제29조 【겸임】 당선자가 학급 정·부회장일 경우 학생회 정·부회장과 학급 정·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8 장 선거소송

제30조 【선거소송】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입후보자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별도양식)

부 칙

1. 선거 결과에 관한 서류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본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의하되, 그 유권해석은 지도위원회 일임한다.
3. 본 규정은 1999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5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2016학년도에 한해서 30대 학생회장 선거 [자격: 3학년만] 및 31대 정·부회장 선거[개정 규정 적용]를 실시한다.)
8. 본 규정은 2017년 3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3. 학급회 선거 규정

제 1장 학급회

제 1 조 【입후보 자격】

품행이 단정하며 통솔력이 있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단,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자, 前 학기까지 사고결석이 1회 이내인 자, 1학기 학생회장은 2학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부회장은 2학기 선거 시 중임 가능)

제 2 조 【선출 방법】

학생들의 추천에 의하여 직선으로 선출한다.

1) 회장

1차 투표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회장 후보로 선출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 3 조 【임기】

학기별로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임명】

각 학급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부회장은 학급 담임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5 조 【자격상실】

학급 정부회장 임기 중 학생 징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자의 후임은 2주 내에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 조 【근무】

- 1) 정부회장은 학급 담임 교사 및 교과 담임 교사의 보좌 역할 및 학급 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사의 지시 및 전달 사항을 정확히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급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담임 교사에게 보고하며 학급 대표로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타 학교 생활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훈과 급훈을 실천하는 모범 학생이 되어야 한다.
- 2) 정부회장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들을 담임 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학급 비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3) 정부회장 당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금지한다.

4. 학생 선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선도원칙】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 2 장 선도 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의결】

-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 ② 이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학지도부장, 해당학년부장과 상별계 담당교사, 학생자치지도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③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이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4조 【기능】

- ①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
 - 가) 학생 선도 위원회는 학생 포상이나 학생 징계 사안(사회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 나) 경미한 학생 징계 사안(학교내의 봉사 이하)이 발생했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과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하고, 교감은 이 위원

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5조 【사안 설명】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장 재심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상별계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장 징 계

제8조 【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은 퇴학의 징계를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9조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장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을 하게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3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8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⑦ 제9조 ①항과 ②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

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0조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심의확정】

-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본인 작성 진술서, 담임교사의 의견 및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 등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심의 사항을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3조 【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해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면 담당 교사가 해벌 상신을 하여 교장 결재(혹은 교감전결)을 받아 징계를 해제한다.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해당 학생이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전에 작성한 서약서를 근거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제16조 【사후 지도】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 ② 퇴학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타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저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3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징계 기준

구분	항	행위내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 학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0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0	0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0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0	0	0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0				
	8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0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10	금지된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0	0	0		
	11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0				
	12	학교 단체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0				
	13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0				
	1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1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0			
	16	법 또는 교칙에 위반되는 문서를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0	0	0	0
	1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0	0	0
수업	18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0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0				
	20	수업을 거부한 학생	0	0	0	0	0

구분	항	행위내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 학
고사	21	고사 기간 중 휴대전화 mp3, 전자사전 등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0	0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0	0			
	23	시험을 거부한 학생		0	0		
	24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및 가담, 동조, 공모, 유포 등 이에 관련된 학생	0	0	0	0	0
약물	25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0				

	26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0	0	0	0
	2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0	0	0
근태	28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한 학생	0				
	29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0	0			
	30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무단 결석을 한 학생	0	0			
	3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무단 결석을 한 학생		0	0		
	3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로 연 30일 이상인 학생(해당 결석일수는 시행령 개정 취지와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결정)			0	0	0
퇴폐 행위	33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 오락을 한 학생	0				
	34	상습적으로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 오락을 한 학생	0	0	0		
	3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0		
	36	불량한(폭력성이 강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 자료 등을 소지하거나 이를 시청한 학생			0	0	
	37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0
금품	38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및 이에 동조, 가담한 학생	0	0	0		
	39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40	금품을 강탈한 학생 및 이에 동조, 가담한 학생	0	0	0	0	0
집단	41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담한 학생	0	0	0		
	42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0
	4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0	0
	4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0
	45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0	0	0
사이버	46	음성, 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자극을 유발한 학생,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0	0	0		
	47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0	0	0	0	0
	48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 배포한 학생	0	0	0	0	0
	49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한 인터넷방송 등)를 개설 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질서를 해친 학생	0	0	0	0	0
기타	50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학생	0	0			

51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2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3	동일 학년에 4회 이상 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이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할 수 있다.
54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③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④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⑤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제5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개정>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제7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

- ①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 ②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 ③ 안전접수 및 처리부 : 30년

④ 회의록 : 30년

⑤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다.

제9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및 지역과 연계한 상담교사를 활용한다.

1. 상담교사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가 하되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2. 학생지도상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람은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담내용의 누설을 금지하고 비밀을 지킨다.

② 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 담당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상시 운영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10조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령에 의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개정 2012.1.26>

제11조 【피해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제12조 【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성폭력 포함)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전학
 4. 학교에서의 봉사 : 환경 미화작업, 교재·교구 정비 등 봉사방법 및 기간을 학교 급별 여건에 따라 규정
 5. 사회봉사
 6.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7. 출석 정지
 8. 학급 교체

제14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다른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안 발생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4. 가해학생 선도 조치 결정
 5. 집행
- ②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의무사항)
- ③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장은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치해야 한다.
- ④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명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교내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학칙에서 정한 징계 등)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일반징계 수준보다 높게 징계한다(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함.)
-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 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한다.
- ⑦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한다.

제15조 【재심청구】

-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제16조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령에 의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언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분쟁조정 신청)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②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 ③ 신청의 사유

2) (분쟁조정 개시)

-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나.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가.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나.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나.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다.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상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교장 및 교사의 의무】

① 학교장은 학생폭력예방을 학생 지도에 있어 최우선의 목표에 둔다.

② 학교장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전교사가 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폭력추방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④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관찰, 상담활동을 통하여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 담임교사는 결손가정, 성격장애, 불량교우관계 등을 사전 파악하고 상담 지도하여야 한다.

⑥ 담임교사는 폭력(가해, 피해)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상담교사 또는 폭력책임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호자도 상담할 수 있다.

⑦ 담임교사는 폭력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18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